#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58

발의연월일: 2025. 5. 20.

발 의 자:김종민·김영배·차규근

윤종오 • 황운하 • 전종덕

한창민 · 허성무 · 맹성규

서삼석 • 박수현 • 용혜인

천하람 · 성일종 · 이성권

민병덕 · 김성원 의원

(1791)

### 제안이유

헌법은 헌법개정 절차를 헌법개정안의 제안, 개정안의 공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확정 및 대통령의 공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개정안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고나 헌법개정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개정안 기초안 마련과 그에 대한 검토 방식,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나 국민이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헌법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헌법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고 국민의 정치적참여 의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이에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헌법개정을 논의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시민위원회, 헌법개 정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 는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헌법개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헌법개정을 위한 회의체의 운영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大韓民國憲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된 헌법개정의 안건을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의 제안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확정한 헌법개정안의 초안을 '헌법개정안 기초안'으로,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확정한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초안을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다. 「국회법」에 따른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성안한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존중하여 마련한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확정, 헌법개정의 방향·취지·조문의 내용 등에 관한 논의 및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 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

원장은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확정 후에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 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시민위원회를 두고, 헌법개정시민위원회는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성안, 헌법개정의 방향·취지·조문의 내용 등에 관한 논의 및 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안 제6조).
- 바. 헌법개정시민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별 분포를 반영하여 무작 위로 추출하되, 사회경제적 분포를 고려하여 당사자 동의 후 헌법 개정특별위원회 의결로 500명 내외의 시민위원을 구성하고, 헌법개 정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 (안 제7조).
- 사.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위원 재적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를 지체 없이 헌법개정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민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헌법개정시민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개정시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시민위원을 해임할 수 있음(안 제9조).
- 자. 헌법개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헌법개정특별 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두고,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자문하는 헌법개정의 방향·취지·조문의 내용에 관한 사항,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성안한 헌법개정안 시민 기초안에 대한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10조).

차.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헌법의 각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위촉함(안 제11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개정을 위한 회의체의 운영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헌법개정안"이란 「大韓民國憲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회재 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의 의안을 말한다.
- 2. "헌법개정안 기초안"이란 헌법개정안의 제안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성안한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바탕으로 제4조에 따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확정한 헌법개정안의 초안을 말한다.
- 3.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이란 제6조에 따른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성안하고 제8조에 따라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초안을 말한다.

제3조(국회의 책무) 국회는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사회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고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

- 제4조(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직무) 「국회법」제45조의2에 따른 헌법개 정특별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 행한다.
  - 1. 제6조에 따른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성안한 헌법개정안 시민기초 안을 반영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확정
  - 2.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 3. 헌법개정의 방향・취지・조문의 내용 등에 관한 논의 및 검토
  - 4.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 등 관련 안건의 심사 및 국가기관·지방자 치단체와 국민의 의견 수렴
- 제5조(헌법개정안 기초안 확정) ① 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특별위원회가 제1항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헌법개정 시민위원회가 제출하고 제10조에 따라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검토 한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한 후에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국회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3장 헌법개정시민위원회

- 제6조(헌법개정시민위원회 설치) ① 헌법개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국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한다.
  - 1.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 성안
  - 2. 헌법개정의 방향·취지와 조문의 내용 등에 관한 논의 및 검토
  - 3. 그 밖에 헌법개정에 관하여 시민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한 사항
- 제7조(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헌법개정시민위원회의 위원(이하 "시민위원"이라 한다)은 특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500명 내외의 시민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민위원은 국민의 성별·연령별 및 지역별 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하되, 직업 등 사회경제적 분포를 고려하여 당사자 동의를 거쳐 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선정한다.
  - ③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시민위원 중 특별위원회가

- 의결로 지정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시민위원회 활동기한은 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 ⑤ 그 밖에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 확정) ① 시민위원회는 헌법개정안 시민 기초안을 성안하고 이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을 제외하고 그 외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민위원회는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확정한 후에 이를 지체 없이 헌법개정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민위원 결격사유와 해임)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시민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시민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제4장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제10조(헌법개정자문위원회 설치) ① 헌법개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 을 수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국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한다.
- 1. 특별위원회가 자문하는 헌법개정의 방향·취지·조문의 내용에 관한 사항
- 2. 시민위원회가 성안한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에 대한 검토
- 3. 그 밖에 헌법개정에 관하여 특별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
- 제1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은 헌법의 각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 제12조(지원단) ①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지원단을 둔다.
  - ②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 •단체에 대하여 시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지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불이익 처우 등 금지) 누구든지 시민위원 또는 자문위원인 사실을 이유로 각종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및 실비변상) 시민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교통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등)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 ② 국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 및 관련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